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7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제3항(項) 중(中) 「전2항(前二項)」을 「전항(前項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63조(條)제1항(項)을 삭제(削除)하고 동(同) 제3항(項) 중(中) 「최후(最後)에 1킬로미터[km·粁」로 절상(切上)함」을 「이것을 1킬로미터[km·粁」로 절상(切上)함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83조(條)에 아래[左]의 1항을 추가(追加)함.

출화책임수량(出貨責任數量)의 정(定)함이 있는 할인임률(割引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책임출화조서(責任出貨調書)를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할인임률적용(割引賃率適用) 부문(部門) 제3호(號) 중(中) 「국선외(局線外)」의 아래[下]에 「(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[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]을 제[除]함)」을 추가(追加)하고, 제4호(號)를 제5호(號)로, 이하(以下) 순차적으로 내리며, 제3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4 본 표(本表)의 임률(賃率)은 화물(貨物)의 발착구간(發著區間)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)으로 넘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(特定)한 경우를 제(除)하고 국선(局線)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)을 통(通)한 임률(賃率) 또는 할인율(割引率)을 나타냄.

「국선내(局線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」을 「조선내(朝鮮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부(同部) 중(中) 철광(鐵鑛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천동(泉洞), 개천(价川)의 행(行)에 아래[左]의 행(行)을 추가(追加)함.

장수산(長壽山),내 토(內土),하성(下聖)	겸 이 포(兼二浦)	차급(車扱)	엔(円) 0.56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

동(同) 토상흑연(土狀黑鉛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영동(永同)의 행(行)의 다음에 아래[左]의 행(行)을 추가(追加)함.

함	창(咸昌)	부산(釜山)·초량(草梁)	차급(車扱)	엔(円) 2.71	본(本) 화물(貨物)은 완전(完全)히 포장[荷造]하여 탁송(託送)함. 적재화차(積載貨車)는 하선(下船)할 때마다 수하인[荷受人]이 청소(淸掃)해야 하는 것으로 함.
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

동(同) 소맥분(小麥粉: 혼합[混合] 맥분[麥粉])을 포함[包含]함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현미(玄米). 벼 [粳]. 대두(大豆)	연안(延安), 연안온천 (延安溫泉)	인천(仁川)·동막(東幕)	차급(車扱)	발착역간 (發著驛間) 엔(円) 2.70
소맥(小麥)	홍현(紅峴) 백천온천(白川溫泉)	"	"	2.52
쌀[米]. 벼[粳]. 조 [粟]. 피(稗). 기장 [黍]. 수수[蜀黍]. 옥수 수[玉蜀黍]. 메밀 [蕎麥]. 두류(豆 類). 맥류(麥類)	충남신창(忠南新昌), 선장(仙掌), 신예원(新 禮院), 예산(禮山), 삽 교(插橋), 홍성(洪城), 광천(廣川)	인	천(仁川)	차급(車扱) 1.85

1. 본(本) 입률(貨率)은 토성경유(土城經由)의 경우에만 적용(適用)함.
2. 본(本) 입률(貨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함.
3. 벼[粳] 및 소맥(小麥)의 표준화차(標準貨車)에 대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를 20톤(噸)으로 함.
4. 본(本) 입률(貨率)은 1934(昭和 9)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(適用)함.

동(同) 식염(食鹽: 정제염[精製鹽]을 포함[包含]함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주안(朱安), 인천(仁川), 진남포(鎭南浦)의 행(行) 다음에 아래[左]의 행(行)을 추가(追加)함.

인	천(仁川)	충남신창(忠南新昌), 선장(仙掌), 신예원(新 禮院), 예산(禮山), 삽 교(插橋), 홍성(洪城), 광천(廣川), 보령(保 寧), 대천(大川), 남포 (藍浦)	차급(車扱)	2할(割) 5푼[分] 감(減)
---	-------	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동(同) 레모네이드(lemonade), 시트론(citron), 사이다(cider), 탄산수(炭酸水)의 항(項) 발역난(發驛欄) 평양(平壤)의 아래[下]에 「, 내수(內秀)」를 추가(追加)함.

동(同) 조선무연탄(朝鮮無煙炭)의 항(項) 발역난(發驛欄) 「천내리(川內里)」의 아래[下]에 「, 화순(和順)」을 추가(追加)함.

동(同) 시멘트(cement)의 항(項) 발역(發驛) 승호리(勝湖里)의 행(行) 착역난(著驛欄) 「포항(浦項)」의 아래[下] 및 발역(發驛) 천내리(川內里)의 행(行) 착역난(著驛欄) 웅기(雄基)의 아래[下]에 모두 「, 여수항(麗水港)」을 추가(追加)함.

동(同) 각급품(各級品: 화약류[火藥類]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(發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의 행(行) 다음에 아래[左]의 행(行)을 추가(追加)함.

인	천(仁川)	예성강(禮成江), 해 주(海州) 간(間) 각 (各) 역(驛)	소화물급 (小貨物扱)	3할(割) 감(減)	본(本) 입률(貨率)은 1934(昭和 9)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(適用)함
---	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

「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경유[釜山經由])의 부문[部]」을 「조선(朝鮮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경유[釜山經由])의 부문[部]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부문[部] 중(中) 생과(生果: 능금[林檎], 배[梨], 복숭아[桃], 포도[葡萄])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함.

쌀 [米]	청 주(淸州)	고베(神戸), 오사카(大阪)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	차급 (車扱)	발착역항(發著驛港) 간(間) 엔(円) 7.91
	청 안(淸安)	"	"	8.70
	음 성(陰城)	"	"	9.31
	소 이(蘇伊)	"	"	9.38
	대소원(大召院)	"	"	9.51
	충 주(忠州)	"	"	9.66
	청 주(淸州)	나고야(名古屋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8.60
	청 안(淸安)	"	"	9.39
	음 성(陰城)	"	"	10.00
	소 이(蘇伊)	"	"	10.07

1. 본(本) 입률(貨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(包含)함
2. 본(本) 입률(貨率)은 1934(昭和 9)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(適用)함

대소원(大召院)	"	"	10.20
충 주(忠州)	"	"	10.35
청 주(淸州)	요코하마(横濱), 도쿄(東京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9.06
청 안(淸安)	"	"	9.85
음 성(陰城)	"	"	10.46
소 이(蘇伊)	요코하마(横濱), 도쿄(東京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10.53
대소원(大召院)	"	"	10.66
충 주(忠州)	"	"	10.81

동(同) 신발주머니[跣足袋]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두류 (豆類)	청 주(淸州)	고베(神戸), 오사카(大阪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차급 (車扱)	발착역항(發著驛港) 간(間) 엔(円)
				8.96
	청 안(淸安)	"	"	9.88
	음 성(陰城)	"	"	10.57
	소 이(蘇伊)	"	"	10.66
	대소원(大召院)	"	"	10.81
	충 주(忠州)	"	"	10.99
	청 주(淸州)	나고야(名古屋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9.75
	청 안(淸安)	"	"	10.67
	음 성(陰城)	"	"	11.36
	소 이(蘇伊)	"	"	11.45
	대소원(大召院)	"	"	11.60
	충 주(忠州)	"	"	11.78
	청 주(淸州)	요코하마(横濱), 도쿄(東京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10.28
	청 안(淸安)	"	"	11.20
	음 성(陰城)	"	"	11.89
	소 이(蘇伊)	"	"	11.98
	대소원(大召院)	"	"	12.13
	충 주(忠州)	"	"	12.31
	청 주(淸州)	하카타(博多: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)	"	9.07
	청 안(淸安)	"	"	10.04
	음 성(陰城)	"	"	10.79
	소 이(蘇伊)	"	"	10.87
	대소원(大召院)	"	"	11.04
	충 주(忠州)	"	"	11.23

1. 본(本) 임률(賃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(包含)함
2. 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4(昭和)9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(適用)함

「국선(局線)과 만주(滿洲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」은 「조선(朝鮮)과 만주(滿洲) 간(間) 발착(發著: 단동경유[安東經由]의 부문[部]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「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선(私設鐵道線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」은 삭제(削除)함.